

전임교원 중심평가영역 변경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원인사 규정 제3조 제4항, 제12조에 근거하여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전임교원 중심평가영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3.02.28.)

제2조(적용 범위)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 이라 한다.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심평가영역” 은 교원인사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평가영역을 의미한다. (개정 2023.02.28.)
2. “중심평가영역 변경” 은 교원별로 정해진 중심평가영역을 다른 중심평가영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4조(심의원칙) ① 교원의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의는 연봉제 교원의 연봉계약 주기(2년 주기)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- ②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심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중심평가영역 변경이 확정된 교원의 인사발령 시기는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5조(변경 신청) ① 중심평가영역 변경의 신청은 신규임용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직전 연봉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교원에 한하며, 신청횟수는 재직 중 2회로 제한한다.

- ② 최초 재임용 평가(R형에 한함) 후 또는 연봉계약 주기로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연구년 종료 후 2년 또는 휴직하여 복직 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교원은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④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본교의 신청 공고 절차에 따라 중심평가영역 변경 신청서(별지서식 1)와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(별지서식 2)를 아래 표 보직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소속		신청서 제출 시 동의 사항
단과	더:함교양대학	학장, 부학장, 학부장의 동의*
대학	그 외 학부(과)	학장, 학부(과)장, 소속학과 교원(2/3 이상)의 동의*
대학원 및 기타 부속기관 등		처(원)장, 부처장, 소속 기관장의 동의*
산학협력단		단장, 부단장, 소속 기관장(센터장, 연구소장 등)의 동의*

* 신청 교원이 소속 조직의 보직자인 경우 상위자 동의만으로 가능
(단, 더:함교양대학 외 단과대학 소속인 경우는 표 동의 사항에 따라 제출)

제6조(심의절차) 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. 단,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신청한 경우, 해당 안전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.

- ②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의 대상자에 대한 정량평가 심사는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된 교육영역, 연구영역, 산학협력영역, 봉사영역의 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학기 포함 최근 2년간의 취득 점수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중심평가영역의 상위 30% 이내의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. (개정 2023.02.28.)
- ③ 정성평가 심사는 근무연한, 근무충실도, 학생지도, 교육방침 이행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며, 상벌(포상, 인사조치 사항), 계열내 상대 순위 등을 감점 또는 가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④ 정량평가 심사결과(50% 반영)와 정성평가 심사결과(50% 반영)를 합산하여 중심평가영역 변경 최종대상자를 선발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의 제청과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7조(변경 후 조치) 중심평가영역 변경이 승인된 교원의 승진, 연봉산정을 위한 업적평가는 변경 후 중심평가영역에 따른 기준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하며,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는 변경 전·후 중심평가영역 기간에 따른 기준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.

제8조(기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하에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(2021.09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2]

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

신 청 자	소 속		학부(과)	
	성 명		직 급	
실적 내역				
<p>※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</p> <p>1. 기독교 이념, 벤처정신 구현 노력 -기독교 신앙과 가치 향상과 벤처정신 구현에 기여한 정량, 정성적 성과</p> <p>2. 교육/연구/산학 기여도- 교육 방법, 교육 내용, 학생지도에 기여한 정량, 정성적 성과</p> <p>3. 대학발전 기여도 - 국책사업 수주, 학교홍보, 장학금 유치, 발전기금 유치 등 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거나, 대학 재정에 기여한 정량, 정성적 성과</p>				
향후 계획				
<p>※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별지 첨부 가능</p> <p>1. 대학발전 기여 부분 -예) 국책사업 수주, 학교홍보, 장학금 유치, 발전기금 유치 등 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거나, 대학 재정에 기여할 가능성</p> <p>2. 소속 학부(과) 또는 기관 기여도 부분 작성 -예) 취업율, 재학율, 충원율 등 소속 기관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거나, 재정적 가치를 높일 가능성</p> <p>3. 교육/연구/산학 기여 부분 -예) 교육 방법, 교육 내용, 학생지도의 참신성, 혁신성, 미래 가능성</p>				

위와 같이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호서대학교 총장 귀하